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인력이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대통령령 제 호

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 본문 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18조(신규등록)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 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연 락 처	(044) 201 - 4291